

목 차

창의적인 사회를 위한 예술인의 발걸음!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안내 지침



- 참고. 용어정리 3
- 1. 사업개요 4
- 2. 추진절차 9
- 3. 의무사항 10
- 4. 창작활동보고서 12
- 별첨.
 - 1) 활동보고서 작성 가이드(기업·기관·공연장 담당자) 15
 - 2) 활동보고서 작성 가이드(참여예술인) 16
 - 3) 활동 사진 작성 가이드(기업·기관·공연장) 17
 - 3) 활동 사진 작성 가이드(참여예술인) 18
- 5. 창작활동비 지급안내 19
- 6. 참여 약정서[약정해지 및 변경] 20
- 7. 기타사항 22
- 별첨.
 - 4)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참여 약정서[기업·기관·공연장] 23
 - 5)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참여 약정서[참여예술인] 26
 - 6)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 지역사업 Q&A 31
 - 7) 약정서 직인 기입방법 33

참고 용어정리

용어의 정의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안내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사업 참여 구성원:
참여기업·기관·공연장, 참여예술인, 부산문화재단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 참여예술인: 기업·기관·공연장과 함께 예술협업활동 기획 및 실행
- 참여기업·기관·공연장: 매칭이 완료된 참여기업·기관·공연장으로서 참여예술인과 함께 예술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기관·공연장
-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부산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칭이 완료된 참여예술인과 참여기업·기관·공연장의 요구매개 및 참여예술인 예술활동 성과관리 및 참여예술인 창작활동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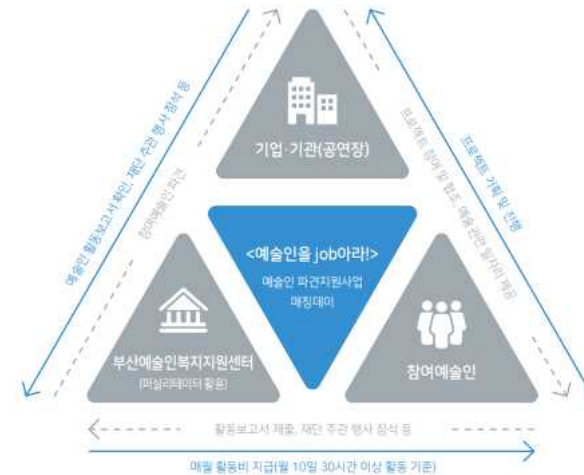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산예술인의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 개발을 통한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및 가치 확산
- 부산예술과 사회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회토대 마련 및 예술인 복지실현
- 부산예술인은 경제적 안정과 자신의 예술능력개발기회를 가지고, 기업·기관·공연장은 협업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 상승 및 조직의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명: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 추진기간: 2022. 6. ~ 11.
- 사업내용: 예술인에게 사회(기업,기관,공연장 등)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 제공 및 예술인 가치 확대
- 추진대상
 - ▶ 기업·기관·공연장: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예술로 기업·기관·공연장의 이슈를 해결 하고자 하는 부산 기업·기관·공연장 32곳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 ▶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부산인 예술인으로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2022. 11. 30.까지**
*창작기술지원: 부산문화회관 2020, 2021년도 공연장 무대기술 아카데미(장치, 기계, 조명, 음향)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 사업구상도



□ 지원개요

1. 지원규모

- 기업·기관·공연장 : 32곳
- 참여예술인: 32명(월 160만원 활동비, 6개월) *창작기술지원 3명: 월 190만원 활동비, 6개월 지급

2. 지원방식

- 공모를 통한 참여기업·기관·공연장 발굴 및 예술인 최대 2인 매칭

3. 지원절차



4.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 굿모닝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 예술인 고용보험도입
 - ▶ 도입배경: 예술인 고용보험(2021.12.10.)시행에 따라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예술협업활동에 대해 「문화예술용역」 적용 확정
 - ▶ 가입대상: 굿모닝 예술인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 가입기간: 굿모닝 예술인 사업 활동 기간(6개월)
 - ▶ 신고 및 납부주체: (재)부산문화재단
 - ▶ 고용보험료: 요율에 따라 재단(사업주)과 예술인 각각 1/2씩 부담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따라 활동비에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과세대상으로 변경됨(고용보험료와 별도로, 사업소득세 총 3.3%제외 후 활동비 지급)

※고용보험료* = 월평균보수(계약금액×0.75÷계약기간)×실업급여요율 1.4% ('22. 7월부터 1.6% 적용)
 보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술인은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기준경비율 25% 일률 적용함
 (계약금액×0.75) '계약기간(월)은 노무제공 월이 20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20일 미만인 경우 0개월로 계산함(월 창작활동비전체금액에 사업소득 3.3%를 공제 후, 월 창작활동비 전체 금액의 25%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에 예술인고용보험 자기부담금 0.75%를 추가 공제 후 활동비가 지급)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보험요율이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유형

활동대상	지원유형	활동사항
내부고객 (임직원)	조직문화개선	사내조직의 문화변화를 목적으로 소통방식, 협업방식, 업무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술적 개입
	교육훈련	조직원의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적 개입
	복리후생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예술적 개입으로 직원의 삶의 질 향상
외부고객 (소비자)	제품기획	제품 및 서비스 기획, 개발 또는 생산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한 예술적 개입
	홍보마케팅	제품 브랜딩, 다양한 홍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예술적 개입
	사회공헌활동	기업(기관)의 사회적 책임구현에 필요한 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적 개입

○ 2022년도 최종 매칭 결과

구분	참여기업·기관·공연장	예술인	예술장르	
창작 지원	1	꿈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소이	미술
	2~3	다함께돌봄센터 하랑플러스	백은석, 서혜인	문학, 무용
	4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박소산	무용
	5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정혜원	무용
	6	모퉁이극장(관객문화협동조합)	하주은	미술
	7	문화공동체지구인	주혜자	연극
	8	문화예술조은학교	정호윤	영화
	9	부산어린이어깨동무(사단법인)	차성욱	미술
	10	부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최용혁	연극
	11~12	영화의전당(재단법인)	안희정, 유혜린	미술, 문학
	13	예원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재희	국악
	14	오픈아츠스페이스머지	이선욱	미술
	15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정승화	미술

	16	희락원(아동양육시설)	이정윤	미술
	17	대한소방공사(주식회사)	박홍석	연극
	18	라텍(주식회사)	김정아	미술
	19	루미너시티(출판사)	이정은	미술
	20	모노마인드	김정리	문학, 연극, 연예
	21	모이다아트(협동조합)	심종후	미술
	22	바림(주식회사)	김소영	미술
	23	신진문화예술행동 흥	배은채	연극
	24	씨네소파(영화배급협동조합)	강정환	기획
	25	아트모아갤러리	김효은	미술
	26	아트하랑	김지우2	미술
	27	어반브릿지(주식회사)	전미희	미술
	28	예술은공유다(주식회사)	엄지영	연극
	29	올드뉴스	김 원	문학, 연예, 영화
	30	이중섭문화마을(주식회사)	김도연	미술
	31	착한세상(주식회사)	김선화	미술
	32	호밀밭(주식회사)	홍석진	영화
창작기술 지원	33	해운대문화회관	우혜린	조명
	34-35	부산문화회관	양유진, 허훈	무대

○ 2021년도 주요 추진성과(24개 기업·기관·공연장, 24명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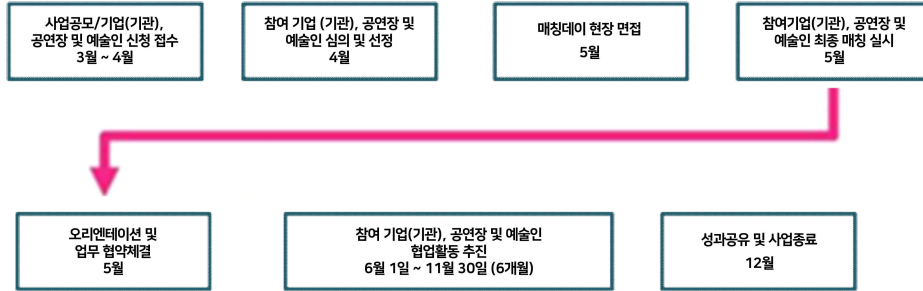
구분	기업기관	참여예술인	업무유형
1	창작 지원	모퉁이극장	홍보 및 마케팅
2		음악당라운	홍보 및 마케팅
3		뿌아공	사회공헌활동
4		(사)부산어린이어깨동무	제품기획

5	동삼종합사회복지관	권혜린	사회공헌활동	
6	(주)라텍	조정현	홍보 및 마케팅	
7	Gachi예술협동조합	임주원	홍보 및 마케팅	
8	(주)아이엠아이	강현민	홍보 및 마케팅	
9	예원주간보호센터	정동훈	홍보 및 마케팅	
10	문화예술조은학교	이현우	교육훈련	
11	(주)알티비피얼라이언스	김소영	제품기획	
12	(주)아트하랑	이광혁	홍보 및 마케팅	
13	모노마인드	이효선	홍보 및 마케팅	
14	아동양육시설 희락원	이정윤	홍보 및 마케팅	
15	모이다아트 협동조합	이정은	홍보 및 마케팅	
16	(주)이중섭문화마을	김도연	홍보 및 마케팅	
17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백은석	교육훈련	
18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	최동민	홍보 및 마케팅	
19	꿈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송지훈	홍보 및 마케팅	
20	아트모아갤러리	정안용	제품기획	
21	창작 기술 지원	해운대문화회관	우혜린	교육훈련
22		부산문화회관	조민수	교육훈련
23		동래문화회관	김종욱	교육훈련
24		을숙도문화회관	박주희	교육훈련

2. 추진절차

□ 추진절차

1. 추진체계



2. 추진방안

- 협업활동기간: 2022. 6. 1.(수) ~ 11. 30.(수)
- 최종 활동보고서는 2022. 11. 20.(토)까지 제출
- 지원규모: 기업·기관·공연장(32곳), 예술인(참여예술인 32명 창작기술지원 3명 총 35명)
 - ▶ 6개월간 참여예술인 월 160만원, 창작기술지원 190만원 창작활동비 지원
 - ※매월 사업소득 3.3% 및 예술인고용보험 0.75%*로 공제 후 지급, 각 개인 상해보험 가입(재단)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보험요율이 변동될 수 있음

□ 활동내용 및 역할

1. 참여기업·기관

- 활동기간: 6월 ~ 11월(※12월 성과공유회 필수참석)
- 활동역할
 -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매칭데이 현장면접 진행
 - ▶ 기업·기관·공연장은 예술인의 활동 시간을 준수(월 10일, 최소 30시간)
 - *창작기술지원의 경우 월 15일
 - ▶ 매칭 된 참여예술인과 협업을 바탕으로 유형별(조직문화 개선, 직원 복리후생, 교육훈련, 제품기획, 홍보마케팅, 사회공헌)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
 - ▶ 협업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업무 환경지원(공간 및 재료비 지원 등)
 - ▶ 프로젝트에 필요한 일부 창작활동비 지원 가능
 - ▶ 협업활동 진행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문서, 사진, 영상 등)
 - ▶ 협업활동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재단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
 - ▶ 재단에서 진행하는 행사(간담회, 성희롱성폭력 교육, 저작권 교육, 성과공유회 등) 참석

- ▶ 연말 최종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참여예술인

- 활동기간: 6월 ~ 11월(※12월 성과공유회 참석)
- 활동시간: 월 10일, 30시간
- 활동역할
 - ▶ **협업활동 진행**
 - 각 기업·기관·공연장별 참여예술인이 확정되면 회의를 통해 협업활동 계획수립 참여 및 활동
 - 참여예술인은 기업·기관·공연장 각각의 니즈(needs)와 욕구, 협업활동의 목적 및 구체적 성과지표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함
 - 협업활동 계획 회의의 결과에 따라 협업활동 계획(활동 공간 및 시간, 진행방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함
 - 기업·기관·공연장-참여예술인 간 협의를 통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원활한 협업활동을 진행
 - 월 10일, 30시간(협업 5일 15시간 / 개별 5일 15시간) 이상 협업활동 참여
 - *창작기술지원 별도 기준 적용 (월 15일)
 - 협업활동 진행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문서, 사진, 영상 등)
 - 매월 1회 ‘활동보고서’ 작성 및 기업·기관·공연장에 제출
 - 협업활동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퍼실리테이터’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
 - ▶ **협업활동 성과 취합 및 공유**
 - 재단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성과에 대한 자료 전달
 - ‘성과보고회’ 협조 및 참여하여 협업활동 성과 공유
 - ▶ 재단에서 진행하는 행사(간담회, 성희롱성폭력 교육, 성과공유회 등) 필수 참석

3. 의무사항

□ 세부 의무사항

1. 예술인의 의무

- 예술인은 본 사업의 안내 및 지침에 따라 기업·기관·공연장 및 재단과의 업무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예술인은 사업기간 동안 매월 10일 30시간 이상의 협업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 및 월별 활동보고서를 매월 말일(30일 또는 31일)까지 기업·기관·공연장에 제출 함.
- 예술인은 세부적인 일정 및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보조인력, 재료 구입, 공간 활용 등)을 기업·기관·공연장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예술인은 매칭 된 기업·기관·공연장에 소속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소속기업·기관·공연장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됨
- 예술인은 사업기간 동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승인완료 자격을 유지해야 함

2. 참여기업·기관의 의무

- 기업·기관·공연장은 본 사업의 안내 및 지침에 따라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와의 업무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존중하며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기업·기관·공연장은 예술인의 활동 시간 매월 10일 30시간 이상을 준수하며 협업활동에 따라 활동시간이 예술인과의 협의를 통해 시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협업활동 시간 초과에 대한 예술인 창작활동비는 기업·기관·공연장에서 별도 추가 지급해야함
- 기업·기관·공연장은 예술인 월별 활동보고서를 매월 5일까지 검토를 완료하여 재단에 제출해야함.

3. 협조 및 유의사항

- 예술인과 기업·기관·공연장은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예술인과 기업·기관·공연장은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보안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 예술인은 당초 기업·기관·공연장과 협의한 업무 이외의 기업·기관·공연장이 요청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기간 중 “예술인”을 통해 산출된 예술협업활동의 결과물에 관한 소유권,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술인”을 포함한 기타 다양한 방식의 협업과정에서 나온 예술협업활동 결과물에 대한 사용 및 귀속 여부는 “예술인”과 “기업·기관·공연장”의 협의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기업·기관”과의 관계에 협의사항은 상호 날인된 서류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
- 재단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굿모닝 예술인>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협업활동 결과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재단은 예술인 복지 기반 조성 및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예술인과 기업·기관·공연장에게 활동 모니터링, 설문조사, 사진·영상 촬영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진, 영상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재단은 예술인과 기업·기관·공연장을 대상으로 파견 예술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워크숍,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음

- 재단은 필요시 미연의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행사에 필요한 단체 보험 가입을 행사 참여자 전원에게 요청할 수 있음

4. 창작활동보고서

창작활동 보고서 개요

1. 활동보고서 개념

- 매월 교부되는 예술인 활동비의 지급근거가 되는 서류이므로 거짓 없이 정확하게 기록
- 활동보고서는 각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 및 아카이빙의 개념
- 참여기업·기관·공연장과 예술인의 예술활동 내용 및 활동 간 발생한 문제와 제언 등을 조율 및 중재하는 역할

2. 활동 인정범위

○ 세부범위

구분	활동내용	활동시간	기타
협업 활동	예술협업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예술인 및 기업·기관·공연장 관계자 상호 활동(회의 등)	최소 5일,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협업활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기관), 공연장 및 예술인 참여 최소 5일 - 창작기술지원 분야 협업활동 15일 ▷ 동일한 날에 진행한 활동의 경우, 시간은 합산되지만 일자는 1일 활동으로 인정 ※ 예시: 2022. 05. 2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00 ~ 16:00 오리엔테이션 - 16:00 ~ 18:00 기관·참여예술인 회의 ★협업일수 1일, 협업활동시간 4시간 인정
개별 활동	예술협업활동과 관련된 리서치, 예술인 모임, 개별 작업 등	최소 5일,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활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활동 관련 자료 조사 - 협업활동 개별작업 ※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27.(금) 14:00 ~ 18:00 협업활동 자료조사 ★개별일수 1일, 개별활동시간 4시간 인정

- 활동은 현장에서 진행된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서 현장은 사업관계자(기업·기관·공연장, 참여 예술인, 재단 등)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소
- 활동의 범위는 기업·기관·공연장 니즈에 대한 리서치, 기업·기관·공연장의 구성원 및 고객

(소비자에 대한 인터뷰, 리서치, 구체적으로 진행된 활동(예술적 개입 프로젝트), 회의 등

- 현장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진행된 사안들(리서치, 프로젝트 구상, 성과물 창작에 필요한 활동 등)은 활동으로 인정하되 전체 의무활동 시간 중 1/2에 해당하는 내에 서만 가능하며, 그 외 의무활동 시간 중 1/2은 파견기업·기관·공연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단, 협업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재단과 협의 후 활동시간 조율 가능)

3. 활동보고서 제출

- 매월 1회, 재단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전자메일을 통해 제출
- 협업활동을 진행한 시간, 세부내용 및 다음 달 진행계획 등에 대해 작성
- 활동이 이루어진 사전택락과 목적하는 바, 구체적 진행 내용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 사후 변화된 지점, 향후 구체적 활동 계획, 활동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방향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논의 또는 도움이 필요한 내용은 <기타건의사항>에 기술
- 활동 마지막 달은 월 1회 제출하는 활동보고서와 별도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참여 기업·기관·공연장 포함)

4. 활동보고서 검토

- 활동보고서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재단은 참여예술인에게 활동보고서 수정 및 보완 요청가능
- 활동 보고서 미제출, 보완 요청에 대한 미이행 등은 활동비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중, 계좌 정보가 변동되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활동비 지급 계좌를 변경해야할 경우, 재단에 공지 후 재단에서 별도 조치

5. 활동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 단순히 활동 내용을 사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이루어진 사전택락과 목적하는바, 구체적 진행 내용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 사후 변화된 지점, 향후 구체적 활동 계획, 활동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재단과 논의 또는 도움이 필요한 내용은 <기타건의사항>에 기술

6. 활동보고서 제출기한

1단계	⇒	2단계	⇒	3단계
참여예술인		기업·기관·공연장 담당자		재단 담당자
활동보고서 제출		참여예술인 활동보고서 확인		활동보고서 확인 및 활동비 지급
매월 말일		익월 5일까지		익월 20일 이내 지급

7. 협업활동 탄력운영계획

- 운영개요
 - ▶ 배 경: 코로나바이러스 인한 사회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 유행병 확산 등 협업활동 운영 특성에 따라 예술인 협업활동 탄력 운영 필요
 - ▶ 기 간: 2022. 6. ~ 10. ※협업활동 특성을 고려 6개월의 협업기간 중 최대 2개월 가능
 - ▶ 내 용: 협업활동 진행 중, 개별 작업 비중이 높은 달은 기업·기관 및 예술인과 협의 후 재단에 요청서를 제출하여 개별활동 일수를 조율 가능하되 최소 활동시간 월 10일 30시간 이상은 준수해야 함.

구분	기존 활동범위	탄력운영 활동범위
활동일수	월 10일, 30시간 - 협업활동: 5일, 15시간 - 개별활동: 5일, 15시간	월 10일, 30시간 - 협업활동: 1일~최대 2일, 5시간 - 개별활동: 최대 8일 25시간


- ※ 탄력운영 활동범위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 후 진행
- ※ 탄력운영 신청 및 재단 승인 후 탄력운영 활동 적용 가능하며, 탄력운영 활동 이후 신청서 제출은 승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별첨1. 활동보고서 작성 가이드(기업·기관·공연장 담당자)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굿모닝 예술인> 참여 기업·기관·공연장
월 별 활동보고서(담당자용)**

파견기업/기관명 파견기업/기관-공연장 (담당자)	홍길동엔터테인먼트 홍길순	직무유형 담당자 연락처	홍보 및 마케팅 010-1234-5678
활동일수 현황			
총 활동일수	6 일	총 활동시간	36 시간
활동내용			
날짜	활동시간	진행장소	내용
05.23	11:00-16:00 (5hr)	홍길동엔터테인먼트 본사(회의)	
05.30	12:00-17:00 (5hr)	홍길동엔터테인먼트 본사(회의)	
06.04	10:00-17:00 (7hr)	개인 작업실(회의 및 활동)	
06.10	09:00-16:00 (7hr)	개인 작업실(촬영활동)	
06.14	12:00-18:00 (6hr)	개인 작업실(촬영활동)	
06.17	11:00-17:00 (6hr)	홍길동엔터테인먼트 본사(회의)	
구 분	<input type="checkbox"/> 활동 - 06.04 / 06.10 / 06.04 / 06.14 <input type="checkbox"/> 회의 - 05.23 / 05.30 / 06.04 / 06.17 <input type="checkbox"/> 기타 - 06.17 1차 모니터링 <input type="checkbox"/> 기업/기관 : 홍길동엔터테인먼트(대표 홍길동) / 홍길순(담당자)		
참여인원	<input type="checkbox"/> 참여 예술인 : 임상훈 <input type="checkbox"/> 기타 : 06.17 1차 모니터링 (홍길동, 홍길순, 홍길자) - 홍길동엔터테인먼트		
추진계획	1. 홍길동엔터테인먼트 로고 디자인 및 기업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원복 촬영 컨셉 회의 (5/23, 5/30) - 네이버 플레이스 업제 등록 2. 사진촬영 컨셉 확정(6/10) 3. 사진촬영 테스트 컷(6/10) - 기업 촬영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작가 개인 작업실에서 촬영 4. 기업 CI 로고 피드백(6/14)		
추진실적	월별계획 - 5월 컨셉기획 - 6월/7월 제품 사진 촬영 - 8월/9월 홈페이지 제작 - 10월/11월 수정 및 업데이트 - 12월 결과보고 촬영 컨셉 후보군 서칭해서 논의 홈페이지 레이아웃 후보군 서칭해서 논의 기업 CI 3건 선택 논의		
기타건의사항	기업 제품(원복) 촬영 작업물 퀄리티를 위해 작가 개인 작업실에서 함께 촬영		


기존안


대체안


대체안


대체안






○ 단순히 활동 내용을 사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이루어진 사전맥락과 목적하는 바, 구체적 진행 내용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 사후 변화된 지점, 향후 구체적 활동 계획, 활동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제단과 논의 또는 도움이 필요한 내용은 <제언 및 건의사항>에 기술

별첨2. 활동보고서 작성 가이드(참여예술인)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굿모닝 예술인> 참여 예술인 활동보고서

이름	홍길동	상	디자이너, 사진
이메일	123456@gmail.com	연락처	010-1234-5678
파견기업/기관-공연장명	홍길동엔터테인먼트	직무유형	홍보 및 마케팅
파견기업/기관-공연장 (담당자)	홍길순	재단담당	홍길자
		파견리더이티	
활동일수 현황			
총 활동일수	6 일	총 활동시간	36 시간
활동내용			
날짜	활동시간	진행장소	내용
05.23	11:00-16:00	홍길동엔터테인먼트 본사(회의)	
05.30	12:00-17:00	홍길동엔터테인먼트 본사(회의)	
06.04	10:00-17:00	개인 작업실(회의 및 활동)	
06.10	09:00-16:00	개인 작업실(촬영활동)	
06.14	12:00-18:00	개인 작업실(촬영활동)	
06.17	11:00-17:00	홍길동엔터테인먼트 본사(회의)	
구 분	<input type="checkbox"/> 활동 - 06.04 / 06.10 / 06.04 / 06.14 <input type="checkbox"/> 회의 - 05.23 / 05.30 / 06.04 / 06.17 <input type="checkbox"/> 기타 - 06.17 1차 모니터링 <input type="checkbox"/> 기업/기관 : 홍길동엔터테인먼트(대표 홍길동) / 홍길순(담당자)		
참여인원	<input type="checkbox"/> 참여 예술인 : 임상훈 <input type="checkbox"/> 기타 : 06.17 1차 모니터링 (홍길동, 홍길순, 홍길자) - 홍길동엔터테인먼트 <input type="checkbox"/> 활동내용 05.23 : 홍길동엔터테인먼트 본사 방문. 1차 회의를 통해 기업의 의견수렴 후 수행 활동 내용 및 일정 확정 - 5월 컨셉기획 - 6월 / 7월 제품 사진 촬영 - 8월 / 9월 홈페이지 제작 - 10월 / 11월 수정 및 업데이트 - 12월 결과보고 05.30 : 기업 홈페이지 구축 및 제품사진 촬영 컨셉 회의 / 네이버 플레이스 업제 등록 - B to B 형태의 홈페이지 제작(WIX) 예정 - 촬영 컨셉 계획		
세부활동내용	 06.04 : 홈페이지 구축 기획 06.10 : 제품사진 촬영 06.14 : 기업 CI 개발 (기초안 디자인) - 기업의 기존 로고를 활용한 디자인 제안		
기타건의사항	 기존안		
	 대체안		
	 대체안		
	 대체안		
기타건의사항	기업 제품(원복) 촬영 작업을 퀄리티를 위해 작가 개인 작업실에서 함께 촬영		

○ 단순히 활동 내용을 사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이루어진 사전맥락과 목적하는 바, 구체적 진행 내용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 사후 변화된 지점, 향후 구체적 활동 계획, 활동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제단과 논의 또는 도움이 필요한 내용은 <제언 및 건의사항>에 기술

별첨3. 활동사진 작성 가이드(기업 · 기관 · 공연장 담당자)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별첨자료>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굿모닝 예술인>
활동사진(기업 · 기관 · 공연장)**

활동사진 ※ 활동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진 첨부



2022.06.02. 1차 회의



2022.06.10. 2차 회의



2022.06.10. 2차 회의 (홈페이지 구축-리서치)



2022.06.10. 2차 회의 (제품사진 컨셉 리서치)



2022.06.20. 3차 회의 (1차 모니터링)



2019.06.20. 3차 회의 (그린섬유 CI 개발)

○ 월별 활동보고서의 증빙자료(사진)를 재단에서 지정한 앱(어플리케이션 명 “타임 스탬프 카메라”)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등 일자, 시간 등 해당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별첨4. 활동사진 작성 가이드(참여예술인)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별첨자료>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굿모닝 예술인>
활동사진(예술인)**

활동사진 ※ 활동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진 첨부



2022.06.02. 1차 회의



2022.06.10. 2차 회의



2022.06.10. 2차 회의 (홈페이지 구축-리서치)



2022.06.10. 2차 회의 (제품사진 컨셉 리서치)



2022.06.20. 3차 회의 (1차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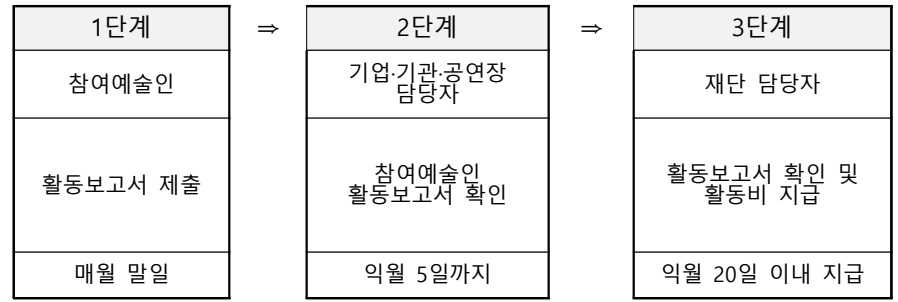
2019.06.20. 3차 회의 (그린섬유 CI 개발)

○ 월별 활동보고서의 증빙자료(사진)를 재단에서 지정한 앱(어플리케이션 명 “타임 스탬프 카메라”)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등 일자, 시간 등 해당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창작활동비 지급안내

창작활동비 지급

1. 창작활동비 지급절차



4. 창작활동비 지급사항

- 예술인 개인에게 개별 지급되며 약정체결 시 재단에 제출한 개인계좌를 통해 매월 참여예술인 160만원, 창작기술지원 190만원이 개별 지급
- 예술인 창작활동비 지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지급에 필요한 서류제출(월별 창작활동 보고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활동비 지급이 연기될 수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따라 활동비에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과세대상으로 변경됨 (예술인고용보험료와 별도로, 사업소득세 총 3.3%제외 후 활동비 지급)
- 활동비는 기업·기관·공연장과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제반 경비임 (진행비, 교통비, 식비, 회의비 등, 협업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는 별도 기업·기관·공연장에서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활동비에 따라 수급대상자격과 급여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사전에 문의하기 바람.
- 활동비 교부 시 제출 서류(참여예술인)
 - 월별 활동보고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첫달에만 제출
 - 통장사본(본인명의) ※첫달에만 제출
 - 기타 활동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 별도 요청 예정

6. 참여약정서(약정해지 및 변경)

재단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예술인)

- 본 사업에 최종 매칭된 참여예술인이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을 불이행했을 경우, 재단은 해당 참여예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할 수 있다.

※의무사항 불이행	조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급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실제로 활동한 것과 다른 내역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증빙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예술인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업과 관련한 성폭력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사실조사를 거쳐 자문회의에서 제재 조치를 의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해지 및 3년간(2023~2025) 재단 사업 참여 제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공통</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활동일수 및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필수협업활동을 미충족한 경우(단, 제출된 사유서가 재단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활동보고서의 증빙자료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일의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활동일수 및 활동내역을 증빙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소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활동비 지급 불가) </td> </tr> <tr> <td>참여 예술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참석 행사(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한 경우 · 활동보고서 제출이 2회 지연된 경우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활동일수 및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필수협업활동을 미충족한 경우(단, 제출된 사유서가 재단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활동보고서의 증빙자료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일의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활동일수 및 활동내역을 증빙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소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활동비 지급 불가) 	참여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참석 행사(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한 경우 · 활동보고서 제출이 2회 지연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건별 경고 1회 부여 · 누적 5회시 약정해지 및 2년간(2023~2024) 재단사업 참여 제한
구분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활동일수 및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필수협업활동을 미충족한 경우(단, 제출된 사유서가 재단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활동보고서의 증빙자료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일의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활동일수 및 활동내역을 증빙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소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활동비 지급 불가) 						
참여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참석 행사(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한 경우 · 활동보고서 제출이 2회 지연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자문위원단을 통해 지속적 협업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주장을 하는 등 협업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 특정인의 언어적·물리적·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협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개인의 일정을 타 참여자들에게 강요하는 경우 - 약정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타 참여자에게 제안 또는 강요한 경우 </div> <p>※소명자료는 사진, 영수증 등으로 제한되며 기업·기관·공연장 확인서는 유효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 약정해지 						

☐ 재단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참여기업·기관·공연장)

- 본 사업에 최종 매칭 된 참여기업·기관·공연장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단은 해당 기업·기관·공연장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분	상세내용	조치내용
사업 참여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기관·공연장의 휴·폐업 또는 도산, 합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 사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 참여예술인의 의무활동일수(시간)의 활동 보장이 불가한 경우 · 참여예술인과의 소통의 문제 또는 갈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참여기업·기관·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지속적 사업 참여가 불가하여 재단에 사업 참여중단을 신청한 경우 · 사업 담당자의 변경 또는 부재로 사업의 지속적 관리 및 참여가 어려운 경우 · 부실한 팀 활동보고서를 지속적으로 확인, 제출하는 경우 ※ 본 시행지침의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경고 사유에 해당되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해지 (참여기업·기관·공연장의 귀책 사유에 따른 것으로 확인 될 경우 2년간 (2023~2024)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예술인과의 협력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동의 없이 참여예술인의 활동을 제3자에게 하도급 준 경우 · 재단 및 참여예술인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의 활동을 강요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근무를 지시한 경우 · 모니터링, 자료 제출 등 재단의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를 합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활동을 통해 취득된 성과물을 재단 또는 참여예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및 시정 지시, 경고 조치
사회 통념 상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보고서 상 참여예술인의 사실과 다른 활동시간 및 활동 내용 기재를 목인한 경우 ·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령하는 경우 · 고의로 재단, 참여예술인을 비방하여 이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 · 사업과 관련한 성폭력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사실조사를 거쳐 자문 회의에서 제재조치를 의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해지 및 재단 사업 참여제한 (영구)

※ 주의 및 시정지시 후 10일 이내 불이행 시, 경고 부여

※ 경고 후 10일 이내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향후 2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2. 약정변경

-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사업)이 변경되어야 될 경우 3자 간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재단으로 변경 신청서 제출

7. 기타사항

☐ 사업 모니터링

-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참여기업·기관·공연장 및 예술인의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시 기업·기관·공연장 및 예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

☐ 사업 평가

-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해 참여기업·기관·공연장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사업 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적극 협조 요망
-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협업활동에 대한 <굿모닝 예술인> 참여에 따른 성과를 차기년도 동일 사업 참여기업·기관·공연장 및 예술인 선정에 적용할 수 있음

☐ 양도금지 및 비밀유지

- 이 약정의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3자 간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
- 3자 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며, 비밀유지 의무는 이 약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

☐ 저작권 및 전용권 ※저작권 교육 별도 실시

- 약정 기간에 예술인을 통해 산출된 예술활동의 결과물은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술인을 포함한 기타 다양한 방식의 협업과정에서 나온 예술 활동 결과물에 대한 귀속 여부는 예술인과 기업·기관·공연장 기타 협업의 주체들과의 협의에 의해 별도로 정함

별첨4.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굿모닝 예술인> 참여약정서(기업·기관·공연장)

(재)부산문화재단 제 2022 - 호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굿모닝 예술인> 참여약정서(기업·기관·공연장)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참여기업·기관·공연장) (이하 "참여기업·기관·공연장"이라 한다)는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굿모닝 예술인>(이하 "굿모닝 예술인"이라 한다) 참여에 관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굿모닝 예술인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참여기업·기관·공연장: "참여예술인"이 예술협업활동을 통해 이슈를 해결,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기관·공연장

③ 참여예술인: 본 사업에 선정되어 "선정 기업·기관·공연장"과 함께 예술협업활동을 수행하는 예술인

제3조(지원기간)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월로부터 지원종료일(2022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재단"은 "참여기업·기관·공연장"에게 "참여예술인"과의 매칭을 지원하며, 예술적 개입을 통한 이슈해결 및 혁신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제5조(의무와 협조) ① "참여기업·기관·공연장"는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예술인"과 협의한 활동에 참여 및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며 다양한 예술 직군이 만들어지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기관·공연장"은 기업·기관·공연장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기간 동안 "참여예술인"의 의무활동 일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월별 활동보고서를 매 익월 5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기관·공연장"는 "참여예술인"과 협의된 필수협업활동(월 1일)에 대해 반드시 참석(협조)해야 한다.

④ "참여기업·기관·공연장"는 "재단"이 지정한 방식으로 활동 마지막달 익월 "재단"에서 지정한 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참여기업·기관·공연장"는 "참여예술인"에게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의 활동을 강요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근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내용의 경우 "참여예술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단, 세부적인 일정 및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보조인력, 재료비, 공간 등)은 "참여예술인"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⑥ "재단"은 굿모닝 예술인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참여예술인"에게 활동 모니터링, 설문조사, 사진·영상 촬영 요청 및 기타 사진, 기록물 등의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활동 결과물(성과물)을 홍보, 전시, 출판, 온라인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여예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재단"은 "참여기업·기관·공연장"의 사업 참여에 필요한 교육 및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미연의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행사에 필요한 단체 보험 가입을 행사 참여 전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기관·공연장"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지원기간 중 산출된 예술협업활동의 결과물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여기업·기관·공연장"을 포함한 기타 다양한 방식의 협업과정에서 나온 예술협업활동 결과물에 대한 사용 및 귀속 여부는"참여예술인", 기타 협업의 주체들과의 협의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참여 중단) ① "참여기업·기관·공연장"은 자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의무와 협조)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업참여 기간 중 "참여기업·기관·공연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참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휴·폐업, 도산, 합병 등)

② "참여기업·기관·공연장"는 사업 참여 중단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사업 참여 중단신청서"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재단"은 "참여기업·기관·공연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내용을 "참여기업·기관·공연장"에게 알리고 10일 이내 시정 또는 서면에 의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의무와 협조)를 위반하여 "재단"으로부터 주의 및 시정지시를 받고 1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경고를 부여하며, 경고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 제6조(사업참여 중단) 제1항에 명백히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사업 참여 중단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참여예술인"의 월별 활동보고서의 허위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경우
4. "참여예술인"의 사업 참여 중단 또는 지원의 취소로 인해 본 사업의 활동이 원활히 이행되지 못하게 된 경우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령하는 경우
6. "재단"의 승인 없이 약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약정내용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7. "참여기업·기관·공연장" 소속 구성원이 고의로 "사업"과 관련된 타참여예술인, 각종 기관, 재단을 비방하여 "사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
8. "참여기업·기관·공연장" 소속 구성원이 사업과 관련한 성폭력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사실조사를 거쳐 자문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의결한 경우
9. 기타 "참여기업·기관·공연장"의 귀책사유로 본 약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지원 취소의 효력) 제6조(사업참여 중단) 또는 제7조(지원의 취소)의 사유로 참여 자격이 취소될 경우, "참여기업·기관·공연장"는 2년간 "재단" 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약정의 변경) 불가피한 사유로 본 약정서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재단"은 "참여기업·기관·공연장"에

게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참여기업·기관·공연장”와 약정사항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다.

2022년 월 일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참여기업·기관·공연장 _____
대표이사	이 미 연 (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명:

별첨5.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참여약정서(참여예술인)

(재)부산문화재단 제2022 - 호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굿모닝 예술인(창작지원)> 참여약정서(참여예술인용)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참여예술인명) (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은 참여기업·기관(이하 “기업·기관”이라 한다)과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굿모닝 예술인(창작지원)>(이하 “사업”이라 한다) 참여에 관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사업”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 ① “예술인”: “사업”에 선정되어 “기업·기관”에 매칭이 완료된 후 예술협업활동을 수행하는 예술인
- ② “기업·기관”: “예술인”이 예술협업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기업·기관

제3조(지원기간)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이후 2022년 6월 1일부터 로부터 지원종료일(2022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 ① “재단”은 “예술인”의 활동비를 활동기간(6월~11월)동안 월 160만원 6개월간 지원한다.
- ②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20.12.10.)되어 “사업”의 예술협업활동에 대해 ‘문화예술용역’ 적용됨에 따라 “재단”이 사업주로서 보험료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다.
 - 1. 활동비는 사업소득세 3.3% 공제 후 지급함.
 - 2. 고용보험료=월평균보수액으로 산정하며 예술인과 재단이 각각 1/2씩 부담함.
- ③ 국가적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선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예술인”의 활동기간 중 1개월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 ④ 활동비는 “예술인”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비용(진행비, 교통비, 식비, 회의비 등)을 포함한다.

제5조(활동비 교부)

- ① “예술인”은 “재단”에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재단에서 제시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

- ② “예술인”이 활동비 교부 은행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단”은 제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은행계좌로 활동비를 교부한다.
- ③ “재단”은 “예술인”에게 월별 활동 후 매 익월 20일까지 활동비를 교부하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예술인”은 “재단”이 지정한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마지막 달은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포함)로 활동을 증빙해야하며, 월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예술인”은 “재단”이 지정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부족한 활동일수를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된 활동일수를 포함한 활동보고서 제출 시 이전 활동비와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활동 마지막달은 해당되지 않는다. ※‘탄력활동신청서’ 제출 및 승인 후 탄력활동 가능
- ⑥ 활동비 교부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활동비 교부를 서류 제출 완료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자격조건)

- ① “예술인”은 본 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예술인”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종료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활동증명> 완료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예술인”이 참여예술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한 의무활동일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증빙(월별 활동보고서 제출)을 해야 한다.
 1. 활동기간에는 매월 10일/30시간 이상 예술협업활동을 수행하며, 그 중 협업활동 5일/15시간 이상, 개별활동 5일/15시간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협업활동 5일에는 “예술인”, “기업·기관”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2. 국가적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예술인”의 협업활동 기준 및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협업활동의 기준 및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비대면 온라인 회의진행가능)
- ④ “예술인”은 “기업·기관”에서 수행할 예술협업활동의 내용을 “재단”과 협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7조(의무와 협조)

- ① “예술인”은 “재단”, “기업·기관”과의 업무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지원 기간 동안 성실히 예술협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예술인”은 제안된 예술협업활동을 변경코자 할 경우 “재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예술인”은 제6조(자격조건) 제3항에 명시된 의무활동일수 원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무활동일수 원칙 내에서 세부적인 일정 및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보조인력, 재료비, 공간 등)은 “기업·기관”과 협의 및 조정하여 활동을 수행한다.

- ④ “예술인”의 월별 활동보고서는 매월 말일까지 “기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⑤ “기업·기관”은 “예술인”의 월별 활동보고서를 확인하며, “기업·기관” 및 “재단”은 월별 활동보고서에 대한 보안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예술인”은 활동결과보고서를 활동 마지막달 익월 5일(12월 5일)까지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⑦ “예술인”은 월별 활동보고서의 증빙자료(사진)를 재단에서 지정한 앱(어플리케이션 명 “타임 스탬프 카메라”)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등 일자, 시간 등 해당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⑧ “예술인”은 “재단”에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⑨ “예술인”은 제7조(의무와 협조) 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에 대한 내용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재단”에서 지정한 양식의 사유서를 지정일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이 지원기간 중 의무활동일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단, 인정사유는 경조사(본인 결혼/입원, 직계가족 사망 등) 및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2. “예술인”이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매월 말일)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유서(증빙자료 포함) 작성하여 “재단”에 익월 5일까지 제출. 단, 인정사유는 천재지변, 경조사, 질병 및 상해, 해외연수(프로젝트)에 한함.
 3. “예술인”이 “재단”에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가 불가할 경우, 사유서(증빙자료 포함) 작성하여 “재단”에 해당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단, 인정사유는 천재지변, 경조사, 질병 및 상해, 해외연수(프로젝트)에 한함.
- ⑩ “재단”은 “예술인”의 예술협업활동에 필요한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 등 단체행사를 진행할 때, 필요시 미연의 사고에 대한 방지로 행사 참여 전원에게 단체 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다. “예술인”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⑪ “재단”은 “사업”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예술협업활동의 결과물(성과물)을 홍보, 전시, 출판, 온라인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예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⑫ “재단”은 예술인 복지 기반 조성 및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예술인”에게 활동 모니터링, 설문조사, 사진·영상 촬영 요구 및 기타 사진, 기록물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예술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⑬ “예술인”은 “재단”의 품위를 지키며 “재단” 또는 “기업·기관”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⑭ “예술인”은 지원기간 또는 지원기간 종료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⑮ 지원기간 중 “예술인”을 통해 산출된 예술협업활동의 결과물에 관한 소유권,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술인”을 포함한 기타 다양한 방식의 협업과정에서 나온 예술협업활동 결과물에 대한 사용 및 귀속 여부는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의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기업·기관”과의 관계에 협의사항은 상호 날인된 서류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

⑯ 예술협업활동의 결과물이 공개되는 경우 “예술인”은 담당 직무 및 역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업·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참여 중단)

① “예술인”은 자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6조(자격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7조(의무와 협조)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활동기간 중 “예술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참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취업, 해외체류, 입원수술, 출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상태 등)
- ② “예술인”은 사업 참여 중단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사업 참여 중단신청서’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예술인”의 ‘사업 참여 중단신청서’를 접수한 후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취소) “재단”은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내용을 “예술인”에게 알리고 시정 조치 요구 후 10일 이내 서면에 의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무와 협조)를 위반하여 “재단”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5회 이상 받았을 경우
2. “재단”이 요구하는 각종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3. 월별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급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제8조(사업 참여 중단) 제1항에 명백히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사업 참여 중단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예술인’이 “재단”, “기업·기관” 모두와 계속하여 5일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령하는 경우
7. “예술인”이 고의로 “사업”과 관련된 타 참여예술인, 각종 기관, 재단을 비방하여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
8. “예술인”이 본 사업과 관련한 성폭력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사실조사를 거쳐 자문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의결한 경우
9. “재단”의 승인 없이 약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약정내용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10. “예술인”이 본인이 소속된 “기업·기관”과 매칭한 경우
11. “예술인”이 “기업·기관”과 지속적인 협업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12. 기타 “예술인”의 귀책사유로 본 약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13. 제4조(지원내용) 제3항에 해당되어 활동비를 선지급 받은 “예술인”이 활동일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사업 참여를 중단할 경우

제10조(지원 취소의 효력)

- ① 제9조(지원의 취소)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 사유로 지원이 취소될 경우, “재단”은 “예술인”의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며, “예술인”은 향후 2년 동안(2023-2024)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9조(지원의 취소) 제13호의 사유로 지원이 취소될 경우, “재단”은 “예술인”의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며, “예술인”은 향후 3년 동안(2023-2025)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 선지급된 활동비를 사업 참여 중단일로부터 한 달 이내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는 경우 “예술인”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약정의 변경) 불가피한 사유로 본 약정서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재단”은 “예술인”에게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예술인”와 약정사항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다.

2022년 5월 27일

“재단”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사업자등록번호 617-82-09348
 대표이사 이 미 연 (인)

“참여예술인”
 _____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별첨6. 2022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굿모닝 예술인> Q&A

1. 활동인정시간 범위

Q1 워크숍, 저작권 상담 등 재단 행사에 참석하면 활동으로 인정 되나요?

A: 네, 인정됩니다. 재단에서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과 간담회, 모니터링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행사 전·후 재단에서 각 행사 참석에 따른 인정시간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예시) 오리엔테이션 활동인정 일수/시간: (1일) 2시간

Q2 리서치나 개인 작업실에서의 활동도 인정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협업활동 관련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단순 개별적 작업, 연습, 관람 등의 시간은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활동의 전체 의무활동일수(10일, 30시간 이상) 중 1/2에 해당하는 5일 15시간 이상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외 활동(5일, 15시간 이상)은 참여 기업·기관과 협의 된 장소 및 업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반드시 전체 인원이 1일의 협업활동 필수**

2. 사업진행 관련

Q1 기업기관 또는 참여예술인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협업활동을 통해 갈등(문제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선 상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논의를 통해 상황 공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방안 도출을 부탁리며,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재단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Q2 해외체류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외에 체류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단 측에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무활동일수(10일, 30시간)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시간의 해외체류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기관·공연장 및 협업활동 예술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탄력 운영신청을 통해 시간 조정은 가능하지만, 10일 30시간 활동이 어려워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활동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Q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활동의 결과를 제작, 홍보, 전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할

경우,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A: 네, 외부에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협업 활동이 공개될 경우, 반드시 "위 내용은 부산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2022 예술인파견지원<굿모닝 예술인>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동영상 혹은 인쇄물(리플릿, 포스터, 도록 등) 등 사업관련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 주최/주관/후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주관/후원 표기방법>

- 주최: 부산문화재단
- 주관: 기업·기관·공연장명



Q4 매칭된 기업·기관·공연장에서 월 10일, 30시간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며 의무활동일수를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참여기업·기관·공연장에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국가적 재해사항의 경우 재단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최대 2개월간 탄력운영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단은 참여기업·기관·공연장과 협의 후, 혹은 국가적 재해사항에 따른 별도의 활동 가이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Q5 매칭된 기업·기관·공연장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매칭된 기업·기관·공연장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재단이 판단할 경우 3자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합니다.

Q6 활동비 원천세는 제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본 사업은 예술인을 파견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09:00~18:00 근무를 원칙으로 월 120~15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 기업 기획자 인력지원 사업'이나 문화단체 지원의 일환으로 기획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관련 다양한 양질의 직무영역(부업가능성) 창출을 위한 발판이 되어주고자 예술인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서 진행되

는 모든 협업활동이 단가 대비 노동으로 환원되기 보다 새로운 예술 리서치 및 예술영역 확장 의 계기로 인식되길 바랍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고용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활동비에 따라 수급대상자격과 급여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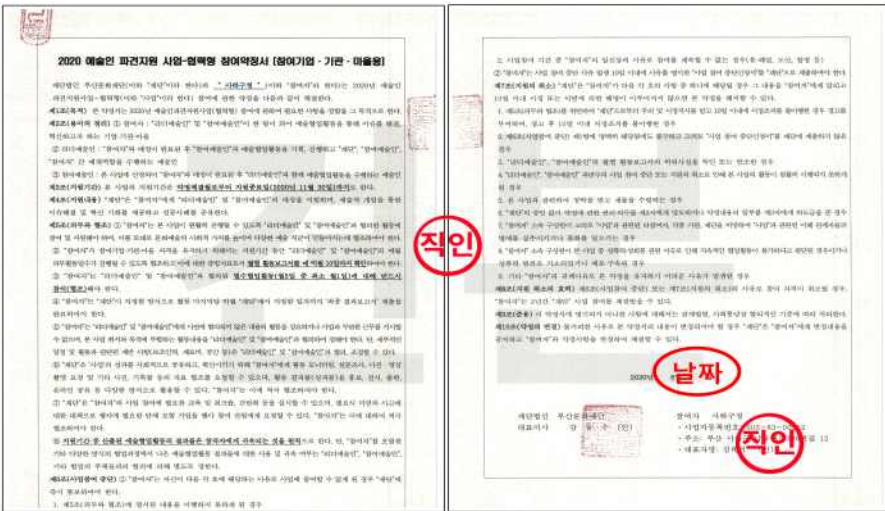
3. 사업참여 중단

Q1 중간에 사업 참여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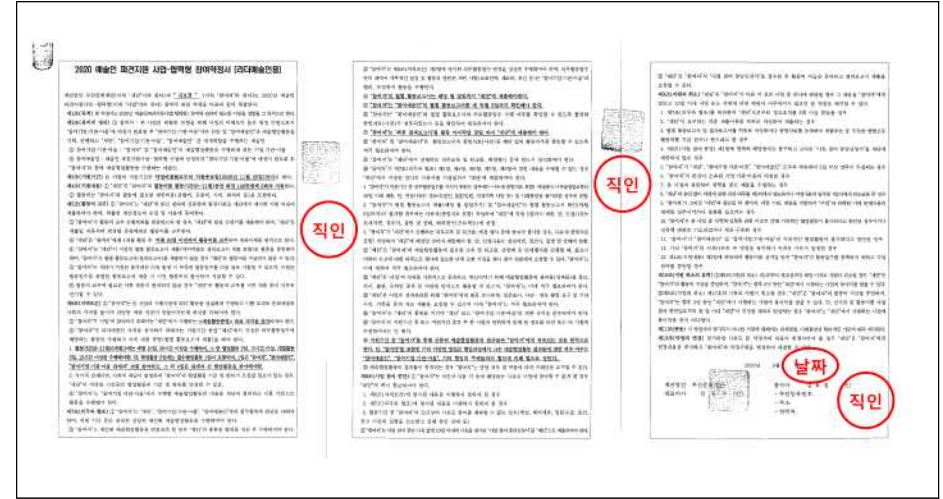
- 사업신청 전 6개월 활동기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셨기 때문에 사전 예측 가능한 참여중단 사안들을 사전 조정 또는 고려하셨으리라 봅니다.
- 따라서 사업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중단을 초래한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재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참여를 중단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향후 재단 사업 참여제한 등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별첨7. 약정서 직인 기입방법

기입 · 기관 · 공연장



예술인



약정서회신 방법

- 약정서 직인 후 스캔 후 기업 · 기관 · 공연장 및 참여예술인 개별 약정서 각 기업 · 기관 · 공연장에서 취합 후 2022. 5. 31.까지 기업 · 기관 · 공연장 최종 이메일 발송(bscfcenter@bscf.or.kr)
- 약정서 취합이 어려울 경우 2022. 6. 15.까지 개별 발송
- ※약정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6월 창작활동비 지급이 연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emo>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